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202
----------	-------

발의연월일 : 2026. 10. 28.

발 의 자 : 손명수 · 김형연 · 한민수
황명선 · 김현정 · 홍기원
백선희 · 박홍배 · 강준현
염태영 · 최민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의 가격을 결정·유지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을 위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이 발주한 교육용 태블릿 PC 가격의 담합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반복적인 담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담합 억지력을 강화하고 경쟁을 회복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자진신고자에게는 시정조치의 면제를 허용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에 교육청을 포함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록 함으로써 반복적인 담합을 근절하고 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자 함(안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국가·지방자치단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중지”를 “중지, 부당한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 명령”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를 “제43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과징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각각 “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과징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u>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u>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 <u>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u>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해당행위의 <u>중지</u>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	제42조(시정조치) ① ----- ----- ----- ----- <u>중지, 부당한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u>

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소속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재판에서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진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 가격 재결정 명령-----.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

-----제43조에-----

-----.

1.·2. (현행과 같음)

② -----과징금-----

-----.

③ -----과징금-----

<p>따른 <u>시정조치나 과징금</u>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⑤ 제1항에 따라 <u>시정조치 또는 과징금</u>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과 제4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u>과징금</u>-----</p> <p>-----</p> <p>---.</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과징금</u>-----</p> <p>-----</p> <p>-----</p> <p>-----</p> <p>-----</p> <p>-----</p> <p>-----.</p>
--	---